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29일, 김남희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3.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1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3. 1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남희의원)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이며, 광고 내

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이유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밀접한 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 두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비추어볼 때, 개정안은 AI를 활용한 조작된 영상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의도적으로 오인하게 하는 의약품등의 광고가 문제되고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 먼저, 김남희의원안은 안 제68조제1항에서 ‘광고’의 의미에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된 결과물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장하는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을 개정함으로써 두 규정을 결합하여

AI 가짜 전문가 광고를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규제하려는 대상 행위가 조문상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여러 규정을 결합하여 해석하여야만 그 취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개정안은 ‘광고’의 정의를 AI의 결과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제68조 전체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제68조 각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광고의 유형별로 AI와 관련된 어떠한 표현이나 방식이 금지되는 것인지 혼란을 겪게 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현행 규제 체계에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가짜 전문가 등장 광고와 같이 소비자 오인 위험이 높은 광고를 중심으로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한지아의원안은 의약품등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 등 전문가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 사용을 금지하는 제68조제2항에 AI 결과물을 포함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AI 가짜 전문가 광고를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기사 사용’과 ‘AI 가짜 전문가 생성을 통한 광고’라는 서로 다른 규제 대상을 하나의 항에서 함께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기사 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개정안의 문언이 기사 자체를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AI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는 기사 사용 금지 규정과 구분하여 별

도의 항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적 명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임.

- ☐ 이상의 검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I 가짜 전문가 광고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항으로 신설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